

##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5. 06. 22.

###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결정 통지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민O서	2001.9.7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결정 통지	정당한 사유없이 연락두절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방문 의무 불이행	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②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 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경기도 이천시 서희로71번길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6.06.22. ~ 2026.07.06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송은주(Tel. 031-739-319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